

ING 이머징마켓현지통화표시증권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

변경시행일 : 2011년 8월 2일

투자설명서 변경

(1) 기재 정정 사유

1. 최근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정기갱신
2. 집합투자업자의 재무재표 업데이트 및 자산운용규모 변경
3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4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중 비교지수 관련 문구 변경
5. 수익자에 대한 과세 관련 문구 변경
6. 위험등급분류 관련 안내 문구 추가

변경내용	변경 전	변경 후
1. 최근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정기갱신	<변경 대상 항목> - 제2부 5.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사항 (운용 현황) - 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- 제3부 1. 재무정보, 2. 연도별 설정 및 매매현황,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- 제5부 4.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	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2011년 7월 25일)
2. 집합투자업자의 재무재표 업데이트 및 자산운용규모 변경	<변경 대상 항목> - 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현황 갱신 (기준일: 2011년 3월말, 2011년 7월 25일)
3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<변경 대상 항목> - 제2부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<변경 대상 항목> (신설) 자본시장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 의거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
4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중 비교지수 관련 문구 변경	<변경 대상 항목> 제2부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(1)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* 비교지수: ~. <u>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(수시공시 등)에 따라 공시 될 예정입니다.</u>	<변경 대상 항목> 제2부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(1)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* 비교지수: ~. 이 경우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변경 및 투자자에게 공시 될 예정입니다.
5. 수익자에 대한 과세 관련 문구 변경	<변경 대상 항목> - 제2부 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, 나. 과세 <생 략> 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	<변경 대상 항목> 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: 표준문구 반영

6. 위험등급분류 관련 안내 문구 추가	<변경 대상 항목> - 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[위험등급기준] < 신 설 >	※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ING자산운용(株) 기준에 따른 상품위험등급분류 기준입니다. 이와 달리, 판매회사는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의한 판매회사별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권유시 상품위험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, 판매회사의 상품위험등급은 판매회사 직원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-----------------------	--	--

간이투자설명서 변경

(1) 기재 정정 사유

1. 최근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정기갱신
2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중 비교지수 관련 문구 변경
3. 위험등급분류 관련 안내 문구 추가
4. 수익자에 대한 과세 관련 문구 변경

변경내용	변경 전	변경 후
1. 최근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정기갱신	<변경 대상 항목> - 제2부 6.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사항 (운용 현황) - 제2부 7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- 제3부 1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- 제4부 1. 재무정보	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2011년 7월 25일)
2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중 비교지수 관련 문구 변경	<변경 대상 항목> 제2부 2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(2) 투자전략 *비교 지수: ~.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(수시공시 등)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.	<변경 대상 항목> 제2부 2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(2) 투자전략 *비교 지수: ~. 이 경우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변경 및 투자자에게 공시될 예정입니다.
3. 위험등급분류 관련 안내 문구 추가	<변경 대상 항목> - 제2부 5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[위험등급기준] < 신 설 >	※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ING자산운용(株) 기준에 따른 상품위험등급분류 기준입니다. 이와 달리, 판매회사는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의한 판매회사별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권유시 상품위험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, 판매회사의 상품위험등급은 판매회사 직원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4. 수익자에 대한 과세 관련 문구 변경	<변경 대상 항목> - 제3부 2. 과세 <생 략> (3)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	<변경 대상 항목> 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: 표준문구 반영 변경